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20
------------	-------

발의연월일 : 2019. 12. 31.

발의자 : 서삼석 · 송갑석 · 안호영

윤후덕 · 위성곤 · 이개호

윤준호 · 황희 · 정인화

박정 · 신창현 · 오영훈

김정호 · 김현권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그러나,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로 생산량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산 증대 목적이 아닌 수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직불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률의 목적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안 제1조).

다.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 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함(안 제3조).

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 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 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사.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등”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소득안정직접지불제”라 한다)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지원직접지불제”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 공익직접지불제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등으로 한다.

제6조(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소득안정직접지불제에 따른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소득안정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득안정직접지불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
3. 어업인 기본소득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안정직접지불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직접지불제의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영지원형직접지불제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경영지원직접지불제에 따른 경영지원형직접지불금(이하 “경영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지원직접지불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
2.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시하는 친환경수산물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
3.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경영지원직접지불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지원직접지불제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요건을 충족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3.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4. 소득안정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할 것
5.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

제9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

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 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보관·비치 대상서류의 종류, 보관·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다만,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위 재부과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

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과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과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부당이득금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 및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 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공익직접지불제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어업법인 :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 등의 의무)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다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

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